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「환경보건법」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및 제3조)
-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, 직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)
- 건강영향조사, 역학조사, 청원의 처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-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가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,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설치하며,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처리를 하도록 「환경보건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 - 안 제2조 및 제3조는 「환경보건법」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「환경보건법」 제10조의2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의 환경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, 위원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「환경보건법」 제15조에 따른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, 「환경보건법」 제17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행 또는 우려되는 경우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관한

사항 및 「환경보건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14조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5조는 「환경보건법」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1. 9. 3.~'21. 9. 23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환경보건법」 개정에 따라 시·도에 위임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,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,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할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